



[2017.1.1] [2016 - 28 , 2016.12.27,]

() 02 - 397 - 7289

1 () 「 」 (" ") 111 2 1
(" ") (" ")
) .

2 () 「 . 」
2016 1 1 3 (3 12 31)

3 () 111 1 1
15 .

4 () 「 」 (" ") 10 2 3 가
(" ") , 10 2 3
(" ") 10 3
.

5 () (.),
가 1 . (.), 가

2 .
10 3 가 3 .
1

4 (.
) 가가 1 1 .

6 () 111 2 1 .
(" ") . , 5 3

가

7 ()

가

가 .

7

6 3

7

가

< 2016 - 28 ,2016.12.27 >

1 ()

2017 1 1

[별표 1]

발전용원자로사업자등의 기준단가(제5조제1항 관련)

수탁기관	기준단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935,960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666,574원

발전용원자로사업자등의 대상업무별 업무량 및 부담금(제5조제1항 관련)

대상업무	업무량 (인·일)	부담금(원)	비고
I.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위탁업무			
1. 발전용원자로 사업자			
가. 법 제1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인가·허가, 지정, 승인에 관련된 안전성 심사			
1)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 표준설계인가, 운영허가, 부지에 관한 사전 승인, 해체승인, 특정기술주제보고서에 관련된 안전성 심사	20,287	18,987,820,000	
나. 법 제1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검사 및 확인·점검			
1)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검사	58,903	55,130,851,000	
다. 법 제1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신고의 접수			
라. 법 제111조제1항제13호에 따른 방사선환경조사, 환경상의 방사선 및 방사능 감시·평가에 관한 사항	975	912,561,000	
마. 제111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주기적 안전성 평가에 관련된 안전성 심사에 관한 사항	2,375	2,222,905,000	
바. 방사성동위원소, 핵연료물질, 운반용기 및 운반 관련 심사 및 검사	85	79,556,000	
합 계	82,625	77,333,693,000	
2. 핵연료 주기시설(한전원자력연료(주))			
가. 정기검사	160	149,753,000	
나. 핵연료 운반	-	-	
다. 환경조사 및 환경영향 평가 보고자료/방사선 분기보고 자료 검토	60	56,157,000	
라. 인·허가 변경사항 심사	200	187,192,000	
마. 안전검사 (시설검사, 특별점검 등)	40	37,438,000	
바. 품질보증검사	25	23,399,000	
사. 방사성폐기물자체처분계획서 심사	90	84,236,000	
아. 핵물질사용(변경) 허가/RI 및 RG사용(변경) 허가(정기검사 포함)	25	23,399,000	
자. 핵연료물질가공사업 허가 심사	-	-	
차. 운반(개별운반검사, 정기검사, 운반용기 등)	50	46,798,000	

합 계	650	608,372,000
3. 방사성폐기물(원자력환경공단)		
가. 정기검사		
1) RI폐기물 관리시설	15	14,039,000
2) 중·저준위폐기물 영구처분시설	300	280,788,000
나. 환경조사 및 환경영향평가 보고 자료 검토 (중·저준위폐기물 영구처분시설 부지감시 및 조사보고서 포함)	300	280,788,000
다. 건설·운영허가 심사		
1) 중·저준위폐기물 영구처분시설	958	896,649,000
라. 인허가 변경사항 심사		
1) 중·저준위폐기물 영구처분시설	800	748,768,000
마. 품질보증검사		
1) 중·저준위폐기물영구처분시설	-	-
바. 처분검사		
1) 중저준위폐기물영구처분시설		
가) 500드럼이하	640	599,014,000
나) 500드럼초과분	20	18,719,000
사. 자체 처분계획서 심사		
1) RI폐기물관리시설	50	46,798,000
아. 방사성물질운반 검사		
1) 중저준위폐기물 영구처분시설	40	37,438,000
2) RI폐기물관리시설(정기검사등)	5	4,679,000
자. 사용후핵연료운반용기설계승인심사		
1) 사용후핵연료운반용기설계승인심사	-	-
차. 방사성동위원소 일시적 사용장소 변경 신고	3	2,807,000
합 계	3,131	2,930,487,000
II.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위탁업무		
1. 발전용원자로 사업자		
가. 법 제111조 제 1항 제2호에 따른 심사		
1) 법 제15조에 따른 발전용원자로설치자 및 법 제2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5조에 따른 발전용원자로 운영자의 계량관리규정에 관한 심사	186	123,982,000
나. 법 제11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검사		
1) 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발전용원자로설치자 및 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발전용원자로운영자의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에 관한 검사	280	186,640,000
다. 법 제111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국제규제물자 정보관리		
1) 법 제98조 제6항의 국제규제물자에 관한 정보관리	96	63,991,000
라. 법 제 111조 제 1항 제10호에 따른 업무		
1) 법 제98조 제1항에 따른 국제규제물자와 그 관련연구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서류 제출관련 업무	796	530,592,000
마. 법 제 111조 제 1항 제15호에 따른 업무		
1) 법 제98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검사 및 시료수거를 위한 인력 및 기술 지원	522	347,951,000

2) 법 제98조 제6항에 따른 국제규제물자의 이동을 확인하기 위한 장치의 설치	-	-
바. 법 제 111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업무		
1) 법 제106조 제3항의 원자력통제에 관한 교육	434	289,293,000
합 계	2,314	1,542,449,000
2. 핵연료주기(한전원자력연료(주))		
가. 법 제1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심사		
1) 법 제44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5조에 따른 핵연료주기사업자의 계량관리규정에 관한 심사	21	13,998,000
나. 법 제11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검사		
1)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핵연료주기사업자의 특정핵물질의 계량 관리에 관한 검사	80	53,325,000
다. 법 제111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국제규제물자 정보관리		
1) 법 제98조 제6항의 국제규제물자에 관한 정보관리	36	23,996,000
라. 법 제 111조 제 1항 제10호에 따른 업무		
1) 법 제98조 제1항에 따른 국제규제물자와 그 관련연구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서류 제출관련 업무	44	29,329,000
마. 법 제 111조 제 1항 제15호에 따른 업무		
1) 법 제98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검사 및 시료수거를 위한 인력 및 기술 지원	108	71,989,000
2) 법 제98조 제6항에 따른 국제규제물자의 이동을 확인하기 위한 장치의 설치	-	-
바. 법 제 111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업무		
1) 법 제106조 제3항의 원자력통제에 관한 교육	6	3,999,000
합 계	295	196,636,000

[별표 2]

발전용원자로사업자등을 제외한 자에 대한 기준단가(제5조제2항 관련)

수탁기관	기준단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390,000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278,000원

발전용원자로사업자등을 제외한 자의 대상업무별 업무량 및 부담금(제5조제2항 관련)

대상업무	업무량 (인·일)	부담금(원)	비고
I.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위탁업무			
1. 한국원자력연구원			
가. 정기검사			
1) 연구용원자로	-	-	
2) 사용후핵연료 처리시설(매2년 주기)	-	-	
3) 연구용원자로 연료가공시설	100	39,000,000	
4) 가연성 폐기물처리시설	30	11,700,000	
5) 연구로(TRIGA-Mark) 해체 확인·점검	30	11,700,000	
나. 환경조사 및 환경영향평가 보고/방사선 분기보고 자료 검토	150	58,500,000	
다. 인·허가 변경사항 심사			
1) 연구용원자로	300	117,000,000	
2) 연구용원자로 연료가공시설 (시설검사 포함)	300	117,000,000	
3) 사용후핵연료 처리시설	100	39,000,000	
4) 가연성폐기물 처리시설	30	11,700,000	
5) 연구로(TRIGA-Mark) 해체 계획서	30	11,700,000	
라. 품질보증검사			
1) 연구용원자로	41	15,990,000	
2) 연구용원자로 연료가공시설 (시설검사 포함)	-	-	
마. 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계획서 심사			
1) 사용후핵연료 처리시설	-	-	
2) 가연성폐기물 처리시설	-	-	
바. 건설연구용원자로 인허가심사(기장연구로)			
1) 건설허가안전성심사	2,125	828,750,000	
합 계	3,236	1,262,040,000	
2. 경희대학교 교육용원자로(AGN-201)			
가. 정기검사			
	-	-	
나. 인·허가 변경사항 심사			
	-	-	
합 계	-	가 -	

3.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 생산, 이동 사용, 판매(건당)

가. 수시비용

1) 검 사

가) 정기검사

(1) 방사성동위원소 현장검사

(가) 밀봉선원 3,000Ci 이상(자체차폐체내에서 사용하는 것 제외)

○ 3,000Ci 이상~100,000Ci 미만 2.4 936,000

○ 100,000Ci 이상 4.5 1,755,000

(나) 밀봉선원 3,000Ci 이상(자체차폐체내에서 사용하는 것) 2.4 936,000

(다) 밀봉선원 3,000Ci 미만 및 개봉선원 2.4 936,000

(2) 방사선발생장치 현장검사 (단 (가),(나)는 전자선 및 감마선에 한함)

(가) 용량 1MeV(1,000kVp) 이상

○ 1MeV 이상~50MeV 미만 2.4 936,000

○ 50MeV 이상~200MeV 미만 4.5 1,755,000

○ 200MeV 이상~500MeV 미만 7 2,730,000

○ 500MeV 이상~1GeV 미만 12 4,680,000

○ 1GeV 이상~5Gev 미만 30 11,700,000

○ 5GeV 이상 50 19,500,000

(나) 용량 1MeV(1,000kVp) 미만 2.4 936,000

(다) 연구용핵융합장치(시설당) 20 7,800,000

(라) 양성자 가속장치

○ 100MeV 이상 및 1mA이상 15 5,850,000

○ 상기 용량 또는 전류 이하 10 3,900,000

(마) 레이저 플라즈마 가속장치

○ 1대 5 1,950,000

○ 2대 이상(1대 초과 대당) 3 1,170,000

(바) 중입자가속장치

○ 의료용 중입자 가속장치 30 11,700,000

○ 의료용 이외의 중입자 가속장치 80 31,200,000

(3) 방사성동위원소등 생산 정기검사

(가) 개봉선원 생산

○ 연간생산량 1,000Ci 이상 10 3,900,000

○ 연간생산량 500Ci 이상~1,000Ci 미만 8 3,120,000

○ 연간생산량 500Ci 미만 6 2,340,000

(나) 밀봉선원 생산

○ 연간생산량 500,000Ci 이상 10 3,900,000

○ 연간생산량 100,000Ci 이상~500,000Ci 미만 8 3,120,000

○ 연간생산량 100,000Ci 미만 6 2,340,000

(다) 방사선발생장치 생산

○ 0.5MeV(500kVp) 미만 4 1,560,000

○ 0.5MeV 이상~1MeV 미만 6 2,340,000

○ 1MeV 이상~ 50MeV 미만	8	3,120,000
○ 50MeV 이상~200MeV 미만	10	3,900,000
○ 200MeV 이상~500MeV 미만	12	4,680,000
○ 500MeV 이상~1GeV 미만	16	6,240,000
○ 1GeV 이상	20	7,800,000
(4) 일시적인 사용장소(방사선투과검사 목적의 작업장)	2	780,000
(5) 제(1),(2),(3),(4)항 이외의 서면심사	0.6	234,000
나) 신규허가에 따른 시설검사		
(1) 방사성동위원소 현장검사		
(가) 밀봉선원 3,000Ci 이상(자체 차폐체내에서 사용하는 것 제외/허가량 기준)		
○ 3,000Ci 이상~100,000Ci 미만	2.4	936,000
○ 100,000Ci 이상~500,000Ci 미만	10	3,900,000
○ 500,000Ci 이상~1,000,000Ci 미만	20	7,800,000
○ 1,000,000Ci 이상~2,000,000Ci 미만	30	11,700,000
○ 2,000,000Ci 이상	50	19,500,000
(나) 밀봉선원 3,000Ci 이상(자체 차폐체내에서 사용하는 것)	2.4	936,000
(다) 밀봉선원 3,000Ci 미만 및 개봉선원	2.4	936,000
(라) 방사성물질 등 유리고화 연구를 위한 방사성동위원소 사용시설	50	19,500,000
(2) 방사선발생장치 현장검사 (단 (가),(나)는 전자선 및 감마선에 한함)		
(가) 용량 1MeV(1,000kVp) 이상		
○ 1MeV 이상~50MeV 미만	2.4	936,000
○ 50MeV 이상~200MeV 미만	10	3,900,000
○ 200MeV 이상~500MeV 미만	20	7,800,000
○ 500MeV 이상~1GeV 미만	50	19,500,000
○ 1GeV 이상~5Gev 미만	100	39,000,000
○ 5GeV 이상	150	58,500,000
(나) 용량 1MeV(1,000kVp) 미만	2.4	936,000
(다) 연구용핵융합장치(시설당)	525	204,750,000
(라) 양성자 가속장치		
○ 100MeV 이상 및 1mA이상	30	11,700,000
○ 상기 용량 또는 전류 이하	20	7,800,000
(마) 레이저플라즈마 가속장치		
○ 1대	5	1,950,000
○ 2대 이상 (1대 초과 대당)	3	1,170,000
(바) 중입자가속장치		
○ 의료용 중입자 가속장치	150	58,500,000
○ 의료용 이외의 중입자 가속장치	300	117,000,000
(3) 방사성동위원소등 생산허가 검사		
(가) 개봉선원 생산		

○ 연간생산량 1,000Ci 이상	50	19,500,000
○ 연간생산량 500Ci 이상~1,000Ci 미만	30	11,700,000
○ 연간생산량 500Ci 미만	20	7,800,000
(나) 밀봉선원 생산		
○ 연간생산량 500,000Ci 이상	50	19,500,000
○ 연간생산량 100,000Ci 이상~500,000Ci 미만	30	11,700,000
○ 연간생산량 100,000Ci 미만	20	7,800,000
(다) 방사선발생장치 생산		
○ 0.5MeV(500kVp) 미만	6	2,340,000
○ 0.5MeV 이상~1MeV 미만	10	3,900,000
○ 1MeV 이상~ 50MeV 미만	20	7,800,000
○ 50MeV 이상~200MeV 미만	30	11,700,000
○ 200MeV 이상~500MeV 미만	40	15,600,000
○ 500MeV 이상~1GeV 미만	50	19,500,000
○ 1GeV 이상	100	39,000,000
(4) 제(1),(2),(3)항 이외의 서면심사	0.6	234,000
다) 변경허가에 따른 시설검사		
(1) 방사성동위원소 현장검사		
(가) 밀봉선원 3,000Ci 이상(자체 차폐체내에서 사용하는 것 제외/허가량 기준)		
① 기존 시설의 변경시		
○ 변경후 허가량이 100,000Ci 미만 일때	2.4	936,000
○ 변경후 허가량이 100,000Ci 이상~500,000Ci 미만 일때	6	2,340,000
○ 변경후 허가량이 500,000Ci 이상~1,000,000Ci 미만 일때	10	3,900,000
○ 변경후 허가량이 1,000,000Ci 이상~2,000,000Ci 미만 일때	15	5,850,000
○ 변경후 허가량이 2,000,000Ci 이상 일때	25	9,750,000
② 시설의 이전설치 또는 추가설치		
○ 3,000Ci 이상~100,000Ci 미만	2.4	936,000
○ 100,000Ci 이상~500,000Ci 미만	10	3,900,000
○ 500,000Ci 이상~1,000,000Ci 미만	20	7,800,000
○ 1,000,000Ci 이상~2,000,000Ci 미만	30	11,700,000
○ 2,000,000Ci 이상	50	19,500,000
(나) 밀봉선원 3,000Ci 이상(자체 차폐체내에서 사용하는 것)	2.4	936,000
(다) 밀봉선원 3,000Ci 미만 및 개봉선원	2.4	936,000
(2) 방사선발생장치 현장검사		
(가) 용량 1MeV(1,000kVp) 이상		
○ 1MeV 이상~50MeV 미만	2.4	936,000
○ 50MeV 이상~200MeV 미만	4.5	1,755,000
○ 200MeV 이상~500MeV 미만	7	2,730,000
○ 500MeV 이상~1GeV 미만	12	4,680,000
○ 1GeV 이상~5Gev 미만	20	7,800,000
○ 5Gev 이상	30	11,700,000

(나) 용량 1MeV(1,000kVp) 미만	2.4	936,000
(3) 방사성동위원소등 생산변경 검사		
(가) 개봉선원 생산		
○ 연간생산량 1,000Ci 이상	8	3,120,000
○ 연간생산량 500Ci 이상~1,000Ci 미만	6	2,340,000
○ 연간생산량 500Ci 미만	4	1,560,000
(나) 밀봉선원 생산		
○ 연간생산량 500,000Ci 이상	8	3,120,000
○ 연간생산량 100,000Ci 이상~500,000Ci 미만	6	2,340,000
○ 연간생산량 100,000Ci 미만	4	1,560,000
(다) 방사선발생장치 생산		
○ 0.5MeV(500kVp) 미만	4	1,560,000
○ 0.5MeV 이상~1MeV 미만	6	2,340,000
○ 1MeV 이상~ 50MeV 미만	8	3,120,000
○ 50MeV 이상~200MeV 미만	10	3,900,000
○ 200MeV 이상~500MeV 미만	12	4,680,000
○ 500MeV 이상~1GeV 미만	16	6,240,000
○ 1GeV 이상	20	7,800,000
(4) 제(1),(2),(3)항 이외의 서면심사	0.6	234,000
라) 방사성동위원소 생산검사		
(1) 밀봉선원의 생산검사	4	1,560,000
(2) 개봉선원의 생산검사	4	1,560,000
2) 신규허가(신고) 심사		
가) 방사성동위원소 사용(이동사용)허가		
(1) 밀봉선원 3,000Ci 미만 및 개봉선원		
(가) 개봉선원		
○ 연간사용량이 50mCi 이상	6.5	2,535,000
○ 연간사용량이 50mCi 미만	4	1,560,000
(나) 밀봉선원		
○ 연간사용량이 50Ci 이상	6.5	2,535,000
○ 연간사용량이 50Ci 미만	4	1,560,000
(2) 밀봉선원 3,000Ci 이상(자체차폐체내에서 사용하는 것)외/허가량 기준		
(가) 3,000Ci 이상~100,000Ci 미만	20	7,800,000
(나) 100,000Ci 이상~500,000Ci 미만	40	15,600,000
(다) 500,000Ci 이상~1,000,000Ci 미만	150	58,500,000
(라) 1,000,000Ci 이상~2,000,000Ci 미만	250	97,500,000
(마) 2,000,000Ci 이상	380	148,200,000
(3) 밀봉선원 3,000Ci 이상(자체 차폐체내에서 사용하는 것)	3.5	1,365,000
(4) 방사성물질 등 유리고화연구를 위한 방사성동위원소 사용시설	300	117,000,000
나) 방사성동위원소 등 판매허가		
(1) 방사성동위원소판매허가	6.5	2,535,000

(2) 방사선발생장치판매허가	4.5	1,755,000
다) 방사성동위원소 등 생산허가		
(1) 방사성동위원소 생산허가		
(가) 개봉선원		
○ 연간생산량 1,000Ci 이상	30	11,700,000
○ 연간생산량 500Ci 이상~1,000Ci 미만	25	9,750,000
○ 연간생산량 500Ci 미만	20	7,800,000
(나) 밀봉선원		
○ 연간생산량 500,000Ci 이상	30	11,700,000
○ 연간생산량 100,000Ci 이상~500,000Ci 미만	25	9,750,000
○ 연간생산량 100,000Ci 미만	20	7,800,000
(2) 방사선발생장치 생산허가		
(가) 0.5MeV(500kVp) 미만	10	3,900,000
(나) 0.5MeV 이상~1MeV 미만	15	5,850,000
(다) 1MeV 이상~50MeV 미만	20	7,800,000
(라) 50MeV 이상~200MeV 미만	60	23,400,000
(마) 200MeV 이상~500MeV 미만	120	46,800,000
(바) 500MeV 이상~1GeV 미만	250	97,500,000
(사) 1GeV 이상	500	195,000,000
라) 방사성동위원소 등(RI, RG) 사용신고	0.6	234,000
마) 일시적인 사용장소 변경신고(방사선투과검사 목적의 작업장 개설신고)	0.5	195,000
바)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이동 사용)허가 (단 (1), (2)는 전자선 및 감마선에 한한다)		
(1) 용량 1MeV(1,000kVp) 미만		
○ 350kVp 1대 이상	6.5	2,535,000
○ 250kVp 2대 이상	6.5	2,535,000
○ 상기 이외의 것	4	1,560,000
(2) 용량 1MeV(1,000kVp이상)-각시설당		
(가) 1MeV 이상~50MeV 미만	20	7,800,000
(나) 50MeV 이상~200MeV 미만	60	23,400,000
(다) 200MeV 이상~500MeV 미만	120	46,800,000
(라) 500MeV 이상~1GeV 미만	250	97,500,000
(마) 1GeV 이상~5GeV 미만	500	195,000,000
(바) 5GeV 이상	800	312,000,000
(3) 연구용핵융합장치(시설당)	800	312,000,000
(4) 양성자 가속장치 (허가사용자가 신규로 양성자가속장치를 설치할 경우도 해당)		
(가) 100MeV 이상 및 1mA이상	400	156,000,000
(나) 100MeV 이상 및 1mA미만 또는 100 MeV 미만 및 1mA이상	250	97,500,000
(다) 100MeV 미만 및 1mA미만	130	50,700,000
(5) 레이저플라즈마 가속장치		가

(가) 1대	50	19,500,000
(나) 2대 이상 (1대 초과 해당)	30	11,700,000
(6) 중입자가속 장치(허가사용자가 신규로 중입자가속 장치를 설치할 경우도 해당)		
(가) 의료용 중입자 가속장치	700	273,000,000
(나) 의료용 이외의 중입자 가속장치	1,500	585,000,000
3) 변경허가(신고) 심사		
가) 방사성동위원소 사용(이동 사용, 판매) 변경허가(신고)		
(1) 밀봉선원 3,000Ci 미만 또는 개봉선원		
(가) 밀봉선원 50Ci 이상 증량과 시설변경 시	3.5	1,365,000
(나) 개봉선원 50mCi 이상 증량과 시설변경 시	3.5	1,365,000
(다) 시설변경 없이 수량만 증가되는 경우	0.6	234,000
(라) 신고사용 대상의 변경	0.6	234,000
(마) 상기(가~라)항 이외의 경우	2.4	936,000
(2) 밀봉선원 3,000Ci 이상(자체차폐체내에서 사용하는 것 제외/허가량 기준)		
(가) 기존 시설의 변경시		
① 변경후 허가량이 100,000Ci 미만 일때	3.5	1,365,000
② 변경후 허가량이 100,000Ci 이상~500,000Ci 미만 일때	20	7,800,000
③ 변경후 허가량이 500,000Ci 이상~1,000,000Ci 미만 일때	75	29,250,000
④ 변경후 허가량이 1,000,000Ci 이상~2,000,000Ci 미만 일때	125	48,750,000
⑤ 변경후 허가량이 2,000,000Ci 이상 일때	190	74,100,000
(나) 시설의 이전설치 또는 추가설치		
① 100,000Ci 미만	20	7,800,000
② 100,000Ci 이상~500,000Ci 미만	40	15,600,000
③ 500,000Ci 이상~1,000,000Ci 미만	150	58,500,000
④ 1,000,000Ci 이상~2,000,000Ci 미만	250	97,500,000
⑤ 2,000,000Ci 이상	380	148,200,000
(3) 밀봉선원 3,000Ci 이상(판매하는 것 또는 자체차폐체내에서 사용하는 것)	2.4	936,000
나)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이동 사용, 판매)변경 허가(신고)		
(1) 용량 1MeV(1,000kVp) 미만		
(가) 350kVp 1대이상 증량과 시설변경 시	3.5	1,365,000
(나) 250kVp 2대이상 증량과 시설변경 시	3.5	1,365,000
(다) 시설변경 없이 수량만 증가되는 경우	0.6	234,000
(라) 사용신고 대상의 변경	0.6	234,000
(마) 상기(가-라)항 이외의 경우	2.4	936,000
(2) 용량 1MeV(1,000kVp) 이상-각시설당		
(가) 기존 시설의 변경시		
① 1MeV 이상~50MeV 미만	3.5	1,365,000
② 50MeV 이상~200MeV	8	3,120,000

③ 200MeV 이상~500MeV 미만	12	4,680,000
④ 500MeV 이상~1GeV 미만	15	5,850,000
⑤ 1GeV 이상	20	7,800,000
(나) 시설의 이전설치 또는 추가설치		
① 1MeV 이상~50MeV 미만	20	7,800,000
② 50MeV 이상~200MeV 미만	60	23,400,000
③ 200MeV 이상~500MeV 미만	120	46,800,000
④ 500MeV 이상~1GeV 미만	250	97,500,000
⑤ 1GeV 이상	500	195,000,000
다) 방사성동위원소 등 생산변경허가		
(1) 방사성동위원소 생산변경허가		
(가) 시설의 변경이 없는 경우		
① 개방선원		
○ 연간생산량 1,000Ci 이상	10	3,900,000
○ 연간생산량 500Ci 이상~1,000Ci 미만	8	3,120,000
○ 연간생산량 500Ci 미만	6	2,340,000
② 밀봉선원		
○ 연간생산량 500,000Ci 이상	10	3,900,000
○ 연간생산량 100,000Ci 이상~500,000Ci 미만	8	3,120,000
○ 연간생산량 100,000Ci 미만	6	2,340,000
(나) 시설의 변경이 있는 경우		
① 개방선원		
○ 연간생산량 1,000Ci 이상	30	11,700,000
○ 연간생산량 500Ci 이상~1,000Ci 미만	25	9,750,000
○ 연간생산량 500Ci 미만	20	7,800,000
② 밀봉선원		
○ 연간생산량 500,000Ci 이상	30	11,700,000
○ 연간생산량 100,000Ci 이상~500,000Ci 미만	25	9,750,000
○ 연간생산량 100,000Ci 미만	20	7,800,000
(2) 방사선발생장치 생산변경허가		
(가) 시설의 변경이 없는 경우		
○ 0.5MeV(500kVp) 미만	3	1,170,000
○ 0.5MeV 이상~1MeV 미만	5	1,950,000
○ 1MeV 이상~ 50MeV 미만	7	2,730,000
○ 50MeV 이상~200MeV 미만	20	7,800,000
○ 200MeV 이상~500MeV 미만	40	15,600,000
○ 500MeV 이상~1GeV 미만	80	31,200,000
○ 1GeV 이상	150	58,500,000
(나) 시설의 변경이 있는 경우		
○ 0.5MeV(500kVp) 미만	10	3,900,000
○ 0.5MeV 이상~1MeV 미만	15	5,850,000
○ 1MeV 이상~ 50MeV 미만	20	7,800,000

○ 50MeV 이상~200MeV 미만	60	23,400,000
○ 200MeV 이상~500MeV 미만	120	46,800,000
○ 500MeV 이상~1GeV 미만	250	97,500,000
○ 1GeV 이상	500	195,000,000
라) 방사선투과검사 목적의 작업장 변경신고(수량감소, 방사선 안전관리자 및 운반차량, 발주자 관련사항 변경은 부담금 대상 업무에서 제외)	0.3	117,000
4) 사용폐지 등에 따른 신고심사(사용 미개시 기관, 밀봉선원 사용기관 및 방사선발생장치 사용기관의 경우 비용부담 대상 업무에서 제외)		
가) 개봉선원 사용기관	2.4	936,000
나) 동위원소 생산용 싸이클로트론		
(1) 해체 및 운반에 따른 양도	60	23,400,000
(2) 해체 및 운반에 따른 폐기	150	58,500,000
5) 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계획서 심사		
가) 최초 제출하는 경우	2	780,000
나) 최초 이후 제출할 때 마다	1	390,000
4. 방사성물질 운반(건당)		
가. 수시비용		
1) 운반검사		
가) 개별운반 대상(1개별 건당)		
(1) 사용후 핵연료	4.5	1,755,000
(2) 신연료	3.5	1,365,000
(3) 방사성동위원소 및 기타	2.4	936,000
나) 정기운반 대상		
(1) 이동사용허가자	2.4	936,000
(2) 생산판매업자	2.4	936,000
(3) 기타(서면심사 등 포함)	0.6	234,000
2) 운반신고심사		
가) 신규신고심사		
(1) 개별운반대상		
(가) 사용후핵연료	4	1,560,000
(나) 신연료	3	1,170,000
(다) 방사성동위원소 및 기타	1	390,000
(2) 정기운반 대상		
(가) 신연료	3	1,170,000
(나) 방사성동위원소 및 기타	1	390,000
나) 변경신고심사		
(1) 사용후 핵연료	4	1,560,000
(2) 신연료	2	780,000
(3) 방사성동위원소 및 기타	0.2	78,000
3) 운반용기 등 설계승인 심사		가

가) 신규승인 심사			
(1) 사용후 핵연료 용기			
(가) 용기중량 1ton 미만(운반내용물 중량 포함)	100	39,000,000	
(나) 1ton 이상 ~ 1ton 증가당 추가	150	58,500,000	
(다) 용기중량 1ton 이상 ~ 2ton 미만(운반내용물 중량포함)	200	78,000,000	
(라) 2ton 이상 ~ 1ton 증가당 추가	15	5,850,000	
(2) 신연료 용기			
(가) 용기중량 200kg 미만(운반내용물 중량 포함)	40	15,600,000	
(나) 200kg 이상 ~ 500kg 미만(운반내용물 중량 포함)	70	27,300,000	
(다) 500kg 이상 ~ 1ton 미만(운반내용물 중량 포함)	100	39,000,000	
(라) 1ton 이상 ~ 1ton 증가당 추가	10	3,900,000	
(3) 방사성동위원소 용기 및 기타용기			
(가) 용기중량 50kg 미만(운반내용물 중량 포함)	30	11,700,000	
(나) 50kg 이상 ~ 100kg 미만	60	23,400,000	
(다) 100kg 이상 ~ 500kg 미만	90	35,100,000	
(라) 500kg 이상 ~ 1ton 미만	100	39,000,000	
(마) 1ton 이상 ~ 1ton 증가당 추가	10	3,900,000	
(4) 특수형 방사성물질			
(가) 용량 150Ci 미만	30	11,700,000	
(나) 150Ci 이상 ~ 300Ci 미만	60	23,400,000	
(다) 300Ci 이상 ~ 500Ci 미만	90	35,100,000	
(라) 500Ci 이상 ~ 1000Ci 미만	120	46,800,000	
(마) 1000Ci 이상	150	58,500,000	
(5) 외국승인 운반용기			
(가) 사용후핵연료 용기	10	3,900,000	
(나) 신연료 용기	6	2,340,000	
(다) 방사성동위원소 용기 및 기타용기	3	1,170,000	
(라) 특수형 방사성물질	3	1,170,000	
(6) 특별승인조치			
(가) 사용후핵연료 용기	40	15,600,000	
(나) 육불화우라늄 운반	24	9,360,000	
(다) 신연료 운반	24	9,360,000	
(라) 방사성동위원소 및 기타운반	6	2,340,000	
나) 변경승인심사			
(1) 사용후핵연료 용기	50	19,500,000	
(2) 신연료 용기	30	11,700,000	
(3) 방사성동위원소 용기 및 기타용기	30	11,700,000	
(4) 특수형 방사성물질	30	11,700,000	
(5) 외국승인운반용기	2	780,000	
다) 유효기간만료에 따른 재발급	0.5	195,000	
4) 운반용기 등 제작검사(10개당)			
가) 사용후핵연료 용기			가

(1) 용기중량 1ton 미만(운반내용물 중량 포함)	30	11,700,000
(2) 1ton 이상 ~ 1ton 증가당 추가	2	780,000
나) 신연료 용기		
(1) 용기중량 1ton 미만(운반내용물 중량 포함)	20	7,800,000
(2) 1ton 이상 ~ 1ton 증가당 추가	1	390,000
다) 방사성동위원소 용기 및 기타용기		
(1) 용기중량 1ton 미만(운반내용물 중량 포함)	10	3,900,000
(2) 100kg 이상 ~ 500kg 미만	15	5,850,000
(3) 500kg 이상 ~ 1ton 미만	20	7,800,000
(4) 1ton 이상 ~ 1ton 증가당 추가	1	390,000
라) 특수형 방사성물질	20	7,800,000
5) 운반용기 사용검사(개당)		
가) 사용후핵연료 용기		
(1) 용기중량 1ton 미만(운반내용물 중량 포함)	5	1,950,000
(2) 1ton 이상 ~ 1ton 증가당 추가	0.5	195,000
나) 신연료 용기		
(1) 사용전핵연료집합체 용기(서면검사)	0.5	195,000
다) UF6 용기		
(1) UF6 Cylinder(현장검사)	4	1,560,000
(2) UF6 Overpack(서면검사)	0.3	117,000
라) 방사성동위원소 용기 및 기타용기		
(1) 서면심사	0.1	39,000
(2) 현장검사		
(가) 10개 이상인 경우(개당)	0.2	78,000
(나) 10개 미만인 경우(개수에 상관없이)	2	780,000
5. 핵연료물질 및 핵원료물질 사용허가 신고(건당)		
가. 수시비용		
1) 검사		
가) 정기검사		
(1) 시설검사 대상 수량 이상	15	5,850,000
(2) 시설검사 대상 수량 미만	4	1,560,000
나) 시설검사		
(1) 신규허가에 따른 시설검사	30	11,700,000
(2) 변경허가에 따른 시설검사	10	3,900,000
2) 신규 사용허가(신고) 심사		
가) 허가		
(1) 시설검사 대상 수량 이상		
(가) 생산목적으로 사용	100	39,000,000
(나) 연구목적으로 사용	20	7,800,000
(다) 기타(계이지류 등)	4	1,560,000
(2) 시설검사 대상 수량 미만		가

(가) 생산목적으로 사용	20	7,800,000
(나) 연구목적으로 사용	10	3,900,000
(다) 기타(계이지류 등)	3	1,170,000
나) 사용신고	3	1,170,000
3) 변경 사용허가(신고) 심사		
가) 변경 사용허가		
(1) 시설검사 대상 수량 이상		
(가) 생산목적으로 사용	30	11,700,000
(나) 연구목적으로 사용	10	3,900,000
(다) 기타(계이지류 등)	2	780,000
(2) 시설검사 대상 수량 미만		
(가) 생산목적으로 사용	10	3,900,000
(나) 연구목적으로 사용	5	1,950,000
(다) 기타(계이지류 등)	2	780,000
나) 변경 사용신고	1	390,000
6. 업무대행자 등록		
가. 수시비용		
1) 업무대행자 등록심사	2.4	936,000
2) 등록사항 변경 신고 심사	0.6	234,000
3) 정기검사(권역별)	2.4	936,000
7. 방사선기기 설계승인 및 검사(「의료기기법」 제6조제2항제2호 에 따른 품목별 제조허가 또는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른 품목별 수입허가를 받은 방사선기기는 제외)		
가. 수시비용		
1) 신규 방사선기기 검사		
가) 방사선발생장치		
(1) 용량 170keV(170kVp) 초과	6	2,340,000
(2) 용량 170keV(170kVp) 이하	3.5	1,365,000
나) 방사성동위원소 내장기기		
(1) 방사성동위원소의 수량이 40MBq 초과	6	2,340,000
(2) 방사성동위원소의 수량이 40MBq 이하	3.5	1,365,000
2) 신규 설계승인 심사		
가) 방사선발생장치		
(1) 방사선발생장치		
(가) 용량 170keV(170kVp) 초과	7	2,730,000
(나) 용량 170keV(170kVp) 이하	5	1,950,000
(2) 방사성동위원소 내장기기		
(가) 방사성동위원소의 수량이 40MBq 초과	7	2,730,000
(나) 방사성동위원소의 수량이 40MBq 이하	5	1,950,000

3) 변경 설계승인 심사			
가) 방사선발생장치			
(1) 용량 170keV(170kVp) 초과	3.5	1,365,000	
(2) 용량 170keV(170kVp) 이하	2.4	936,000	
나) 방사성동위원소 내장기기			
(1) 방사성동위원소의 수량 40MBq 초과	3.5	1,365,000	
(2) 방사성동위원소의 수량 40MBq 이하	2.4	936,000	
8. 판독업무자 등록			
가. 수시비용			
1) 판독업무자 정기검사	15	5,850,000	
2) 신규 판독업무 사용개시전 검사	15	5,850,000	
3) 변경 판독업무 사용개시전 검사	15	5,850,000	
4) 판독업무자 등록	10	3,900,000	
5) 판독업무자 등록변경 신고(품질보증계획서 및 판독업무자 주소, 이름 등 판독품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항의 변경 신고는 제외)	3	1,170,000	
II.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위탁업무			
1. 한국원자력연구원(연구용 원자로/핵연료주기 사업자 핵연료물질 사용허가자)			
가. 법 제1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심사			
1) 법 제34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5조에 따른 연구용원자로등 설치자, 법 제44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5조에 따른 핵연료 주기사업자, 법 제51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5조에 따른 핵연료물질사용자의 계량관리규정에 관한 심사	21	5,838,000	
나. 법 제11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검사			
1) 법 제34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6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연구용원자로등설치자,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핵연료 주기사업자,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핵연료물질사용자의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에 관한 검사	145	40,310,000	
다. 법 제111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국제규제물자 정보관리			
1) 법 제98조 제6항의 국제규제물자에 관한 정보관리	72	20,016,000	
라. 법 제 111조 제 1항 제10호에 따른 업무			
1) 법 제98조 제1항에 따른 국제규제물자와 그 관련연구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서류 제출관련 업무	156	43,368,000	
마. 법 제 111조 제 1항 제15호에 따른 업무			
1) 법 제98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검사 및 시료수거를 위한 인력 및 기술 지원	137	38,086,000	
2) 법 제98조 제6항에 따른 국제규제물자의 이동을1확인하기 위한	12	3,336,000	

장치의 설치			
바. 법 제 111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업무			
1) (법 제106조 제3항) 원자력통제에 관한 교육	135	37,530,000	
합 계	678	188,484,000	

[별표3]

원자력관계면허소지자 보수교육 부담금(제5조제3항 관련)

교육기관	면허		부담금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로조종사면허	공통과정	19만3000원
		전문과정	10만7000원
		실습과정	12만8000원
	원자로조종감독자 면허	공통과정	19만3000원
		전문과정	10만7000원
		실습과정	12만8000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핵연료물질취급자면허	7만원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면허	7만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방사선진흥협회 한국원자력안전아카데미 한국원자력연구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7만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	7만원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7만원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수출입 관련 업무 부담금(제5조제3항 관련)

구분	종류	적용기준	부담금
요건확인	개봉선원	수입가의 미화	3.0원/\$
		수출가의 미화	1.8원/\$
	밀봉선원 및 내장기기	수입가의 미화	2.5원/\$
		수출가의 미화	2.0원/\$
	방사선발생장치 및 부분품	수출입가의 미화	1.8원/\$
	요건면제	방사성동위원소	수출입가의 미화
방사선발생장치		2.0원/\$	

<비고>

- 환율은 매분기 첫째날 외환은행 외국환율 최초 고시 매매기준율에 따라 적용한다.
- 수출신고 확인에 따른 비용을 산출함에 있어 수출신고확인대상 품목 중 수입신고확인을 받은 품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해 품목에 대한 수출비용에서 당해 수입품목의 비용을 차감할 수 있다.
- 신고 건당 최대 비용은 200만원으로 한다.

방사선작업종사자 피폭기록건강진단기록 및 보고의 관리 부담금(제5조제3항 관련)